

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용산에 “디지털대장간”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·운영하고 있으며, 동일 건물 내 제조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“용산상상가”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던 “디지털대장간”과 민간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던 “용산상상가”를 통합하여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인 “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”로 운영하기 위한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23.1.1. ~ 2025.12.31.)
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1,985백만원('22년 예산)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○ 추진경위

<디지털대장간>

- 2016. 02. : 용산센터 시제품제작소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
- 2016. 05. : 제267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2016. 06. : (주)엔피프틴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개소
- 2019. 02. : 디지털대장간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
- 2019. 02. : 제285회 시의회 보고
- 2019. 06. : (주)엔피프틴 민간위탁 협약체결
- 2022. 07. : (주)엔피프틴 민간위탁 종료

※ 당초 '22.05.31.종료이나 용산상상가와 통합용역추진을 위해 2개월 연장함

<용산상상가>

- 2018. 06. : 용산전자 상상가 운영용역 추진계획 수립
- 2018. 08. : (주)엔피프틴 용역계약 체결 및 운영
- 2020. 11. : Y밸리 도심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(공실) 활용 거점공간 조성
- 2021. 07. : 용산전자상가 일대 창업지원시설 업무이관 (재생정책과→ 창업정책과)
- 2022. 05. :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민간위탁(신규) 추진계획 수립
- 2022. 06. : 제4차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·의결(적정 통보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전자·IT제조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, 시제품 양산,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, 우수한 민간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 투자유치를 연계하여 전자제조 기획·설계·제작·상품화 등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기술, 노하우 및 인력을 갖춘 역량있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
- 이에 다양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전자 및 IT 제조 창업기업 보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○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- 전자·IT 기반의 스타트업 맞춤형(기술사업화, 마케팅 등) 집중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예비창업가·초기창업기업 시제품제작 특화지원
 - H/W와 S/W 결합의 전자·IT제조 스타트업 제품화 엑셀러레이터 지원
 - 입주기업 선발·지원·평가·관리 업무 및
 - 디지털대장간 및 상상가(원효전자상가 2,3층) 시설관리 및 운영
 - 안전대책 및 재난대책 수립 및 매뉴얼 작성 등 시설 안전관리
- ※ 본 시설은 용산구 소유 시설로서, 서울시와 용산구 업무협약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5년간 무상사용('27.12.31.까지)함

라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6.30. 개최)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정책과 서북권창업팀 김태승 (☎ 2133-4884)
김치만 (☎ 2133-4886)